

2023년 하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공모사업 안내

- I. 사업개요
- II. 세부추진계획

2023. 5. 16.

**ESG상생협력실
상생협력팀**

I.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하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공모사업
2. 지원기간 : 2023년 7월 ~ 12월
3. 지원대상 :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역축제, 문화·예술축제, 체육행사, 일반행사
4. 지원예산 : 300,000천원(영업외비용_기부금)
5. 접수방법 : 이메일(winwin@kangwonland.com)접수
 - 공고방법 : 강원랜드 홈페이지, 지자체 공문발송, 이메일 및 문자 발송 등
6. 추진일정

구 분	일정
접수	2023. 5. 16.(화) ~ 25.(목)
적격심사 및 사전심사	2023. 5. 26.(금) ~ 6. 16.(금)
최종심사	
결과발표	2023. 6월 말
조정 및 집행	2023. 7월~12월
정산	수시

II. 세부 추진계획(안)

1. 지원사업 내용

가. 지원기간 : 2023년 7월 ~ 12월

나. 지원대상 :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정선·태백·영월·삼척) 개최 행사

구분	세부내용
지역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주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향토축제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축제
문화·예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자체 및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을 담은 문화·예술축제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소통·참여형 문화·예술 행사
체육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요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도 단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
일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의 역사 및 특수성을 반영한 공익목적의 기념행사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사

다. 지원자격 :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 소재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라. 결격대상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①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6조②항1호)
- 당사로부터 기부금 반납 요청을 받고 공모 마감일까지 기부금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
- 기부금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별표1] 기부금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해당된 기관 또는 단체
- 1천만원이상 체육행사 공모 신청 기관 및 단체
(관련법에 의거 체육행사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이 아님)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

- 「2023년 하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 신청서」 별도 첨부

나. 제출방법 : 이메일(winwin@kangwonland.com)접수

다. 제출서류 : 기부금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고유번호증, 정관 등

라. 신청필수사항

1) 기부금품모집등록

-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요청단체는 기부금 지원 전 기부금품 모집등록 必

2) 회계감사

- 2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수혜단체는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必

3)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는 증빙서류 제출

4) 강원랜드 기부금 전용통장(단체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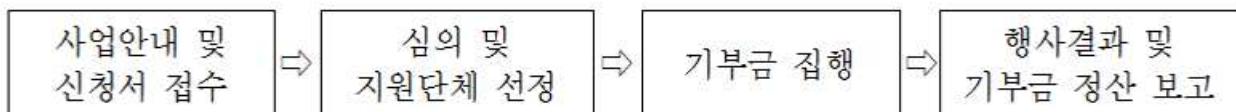
5) 정관 또는 회칙

6) 기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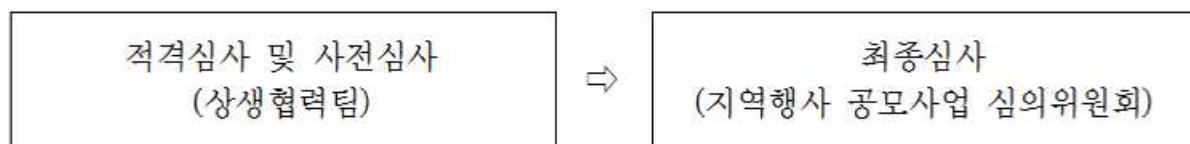
-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급확인서 등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3. 심사계획

가. 사업추진절차



나. 심사절차



1) 적격심사 및 사전심사

- 가) 지원 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중복사업 점검
- 나) 영리단체 및 개인자격 신청 불가
- 다) 1천만원 이상 체육행사는 신청 불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②항에 따라 체육행사는 기부금품법 모집등록 대상사업이 아님
- 라) 1단체 1개 사업만 신청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 사업 모두 심사에서 제외
- 마) 지원제외 행사
 - 강원랜드(ESG상생협력실, 홍보실 등), 사회공헌재단 등 추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법인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사업
 - 친목단체(동호회 포함)의 단순 기념식, 회원대회, 한마음대회, 명랑 운동회, 체육대회, 결의대회, 정기공연, 전시회, 도서발간 기념행사※ 단, 폐광지역 상징성 · 특수성이 있는 행사인 경우 예외적용 가능
 - 국내 · 외 벤치마킹 및 견학 프로그램, 강연 중심의 교육행사
 - 인건비성 경비(출연료 포함) 및 식대, 경품비 위주로 구성된 사업
 -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
 - 아래의 사업비는 지원불가
 - 기관 · 단체의 신규 설립 비용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비용
 - 장학금 및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재교부 비용
 -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 · 단체의 운영 및 경상경비, 자산 취득형 경비 등
- 바) 총 행사비용(사업비) 20%이상 자부담금 또는 공공재원을 갖춘 행사에 한해 기부금 최종심사 대상으로 선정

2) 최종심사 / 심사위원 구성 : 총 5인(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3인)

3) 심사항목

연 번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1	사업의 목적, 사업대상, 추진단체 등 공익성	S/A/B/C/D	25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	S/A/B/C/D	25
3	사업수행 및 지원을 통한 효과성	S/A/B/C/D	25
4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구성에 대한 기여도	S/A/B/C/D	25
계			100

※ 선정기준: 심의위원 종합 평균점수 80점 이상 중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지원 금액결정

4) 심의 기준

- 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사 지원
- 나) 국비, 지방비 등을 통한 재원확보 경쟁력, 공신력이 있는 행사 지원
- 다) 지역의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기획의도를 갖춘 행사
- 라) 공동체 활성화 및 복원행사 우대(지속성을 갖춘 공동체 활동 행사)

4. 세부추진일정

가. 하반기 기부금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공고 및 접수	'23. 5. 16(화) ~ 2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winwin@kangwonland.com) 지자체 및 관련 기관(문화·체육·예술 단체) 일정 안내
적격심사 및 사전심사	'23. 5. 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자격 적격심사, 사업실적 및 계획점검, 중복여부 등
	~ 6. 1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행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발표	'23. 6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통보(공문) - 임박행사 우선 심의 · 통보 가능
조정 및 집행	'23. 7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확정에 따른 변경계획서 및 이행확인서 접수 거래처 등록 및 변경 등
정산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종료 후 90일 이내 행사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부금 위반 행위 및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기준
1. 기부금을 교부받은 단체나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헉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헉령액 환수 및 향후 영구 지원 중단
2. 기부금을 교부받은 단체나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유용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유용액 환수 및 향후 영구 지원 중단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기부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목적 외 사용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 중단(단, 환수가 어려울 경우 영구 지원중단)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중단
5. 기타 회사의 중요한 기부금 지원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기부금 지원건과 관련한 자료 요청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안별 주관부서장의 의사결정에 따름
6. 후원, 협찬, 행사, 광고 등의 접행에 있어서 지원조건(혜택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집행 중단 및 향후, 3년간 지원 중단
7. 대내·외적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기부자(당사)의 명예를 해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지원금 집행 중단 및 향후, 3년간 지원 중단